

## □ 지방세법 시행령

현 행	개 정 안
<p>제34조(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) 법 제20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34조(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6.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(이하 이 조에서 “주택”이라 한다)을 취득한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</u></p> <p><u>가. 제28조의2제2호가목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목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: 그 사유가 발생한 날</u></p> <p><u>나. 제28조의2제3호 본문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: 그 사유가 발생한 날</u></p> <p><u>다. 제28조의2제5호 본문에 따</u></p>